[별표] <개정 2019. 9. 25., 2022.8.12.>

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(제4조 관련)(안)

배정항목			점수	비고
①우선배정	대문, 상가 출입구 및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		50	현장 확인
② 주차거리	30m 미만		10	건물과 신청구획 간 직선거리
	30m 이상 ~ 100m 미만		5	
	100m 이상		3	
③ 배기량	1,000cc 미만 승용차		5	※ 경차, 저공해(친환경) **중복 적용 불가**
	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(전기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)			
④ 현주소 거주기간	20년 이상		10	주민등록 초본 확인 (관내 최종 전입일)
	15년 이상 ~ 20년 미만		8	
	10년 이상 ~ 15년 미만		6	
	5년 이상 ~ 10년 미만		3	
	5년 미만		1	
⑤ 가산점 (중복적용 불가)	국가유공자 등		10	국가보훈처 등록된 차량(신청인 본인) ※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(주차요금감면) 해당
	등록장애인	심한 장애인	10	장애인복지카드(신청인 본인)
		심하지 않은 장애인	5	
	다자녀 가구(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)		10	주민등록표 기준 (18세이하 2명이상 가정)
⑥ 대기자 가점 (대기기간)	3년 이상		20	신청자료
	2년 이상 ~ 3년 미만		15	
	1년 이상 ~ 2년 미만		10	
	신청일 ~ 1년 미만		5	
⑦ 사용기간	6개월 미만		5	신청자료
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	3	
	1년 이상 ~ 1년 6개월 미만		1	
	1년 6개월 이상		0	

※ 비고

1. 동일 주차구획에 다수 신청 시 항목별 점수 합산하여 **총점이 높은 신청인 우선 배정**
2. 총점이 동점인 경우 등록장애인 차량, 대기기간, 주차거리, 현주소지 거주기간 순으로 배정
3. 신청구간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신청 순 배정
4.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